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6. 20.

行政委員會專門委員金玉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討報告書

1. 경 과

의안 제484호로 2022년 6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지원대상 수정(안 제2조, 제3조)
-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약칭 사용 삭제(안 제3조)
- 다.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4조,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5.6.~5.26./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서울시·자치구·시교육청 공동사업으로 지원해 온 입학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학교"의 정의에서 기존에 제외됐던 초등학교를 포함 하도록 하고 "입학준비금"의 정의를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에서 물품구입 비용 등으로 변경함.
-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포함하여 입학 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
- 그 밖에 개정 조문은 사용이 없는 약칭 규정을 삭제하고 띄어 쓰기 및 용어 등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임.
- 참고로 2021년 서울시, 시교육청, 자치구 간 협의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2022.1.6.전부개정, 2022.1.6. 시행)가 개정되었으며
- 이를 근거로 2022년 본예산에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이 기편성되어 현재 지급하고 있음.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조건(분담비율)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시교육청 40%, 시비 30%, 구비 30%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시교육청 50%, 시비 30%, 구비 20%

○ 검토 결과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전 자치구가 시·자치구·시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입학지원금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구 교육복지 체계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 그밖에 조문정비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1. 초등학교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3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하다.
-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등학제) 등에 입학하려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